

신임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바란다! – 한농연 12대 요구사항 중심으로 –

현재 미국산 쇠고기 및 값싼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또한 비료 · 사료 · 유류 값 등 생산비가 급등하여 현장 농업인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농업계가 신임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이번호에서는 신임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바라는 농업계의 주요 현안과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 현장 농촌의 민심은 어떠한가?

현재 미국산 쇠고기 및 값싼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농가 및 어가 경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평균 소득은 3,196만 7,000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6년 3,230만 3,000원보다 1.0%(33만 6000원) 줄어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료 · 사료 · 유류 값 등 생산비가 급등하여 현장 농업인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현재 비료 값은 올해 초 24%를 인상하고 지난 6월에는 62.9%가 상승하였다. 물론 정부와 농협의 일부 보조가 있었지만 그나마도 올해로만 한정되어 있다. 사료 값도 작년 대비 30%가 상승하였고 면세유 경유 값은 리터 당 1,400원을 넘고 있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생산비는 급등하는데 농업 최강대국인 미국과 FTA마저 비준된다면 농업 · 농촌의 붕괴는 현실화 될 것이라는 것은 현장 농촌의 의견이다.

□ 현장 농민들이 요구하는 12대 농정 과제

○ 첫 번째 농업의 피해를 전제로 진행되는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이다.

- 한미FTA는 미국 요구의 전면 수용으로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수용하였다. 4개품목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했으나 쿼터물량을 제공하기로 하여 사실상의 개방 효과로 농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 이에 한미FTA로 인한 이익 중 일부를 농업에 지원하고 ‘품목별 피해보전 직불제’ 산정 방식을 변경해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장치와 농촌형 특별소득보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두 번째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이다.

- 이번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광우병 위험 물질의 수입을 차단하지 못해 국민 건강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추가협상에도 민간자율인 품질평가 시스템(QSA)만 믿고 수입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산지 소값은 급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 이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국민 건강 주권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마련해야 한다.

○ 세 번째 통상절차법 제정이다.

- 통상정책 수립과정에서 이해당사자나 피해당사자 등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나 국민적 합의체계가 부족하여 극심한 찬반양론이 벌어져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보는 산업분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확보해나가고, 지원체계를 마련해나가는 과정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 이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통상절차법 제정하여 ▲협상개시 전 절차, ▲협상 중 절차, ▲협상 후 절차에 대하여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 네 번 째 식량자급률 상향 조정 및 법제화이다.

-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보리쌀, 밀, 옥수수, 두류를 중심으로 곡물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세계 주요 선진국의 식량 자급률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주요 농업정책의 지표가 되고 있다.
- 이에 식량안보의 탄탄한 기반 구축을 위한 식량자급률목표치를 법제화하고 WTO 허용 대상 각종 직불제의 확충 및 지원 단가 대폭 인상을 통해 농가소득보전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기조로 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 다섯 번째 농림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화이다.

- 현재 세계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향후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환급을 골자로 한 유류세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환급 기준이 턱 없이 높아 현장 농어민들이 피부로 느끼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이에 현행 정부의 공시 가격 보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농협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철폐하거나 정부에서 부담해한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면세유 카드제도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를 면세유에 전가시키는 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과 일반 카드로 거래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 여섯 번째 농어가부채이자탕감법 제정이다.

- 현재 농업·농촌은 동시다발 FTA 추진과 농산물 가격 폭락·농가부채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가부채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농가부채는 농업·농촌의 어메니티(amenity)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부채는 농촌의 이탈을 가속화 해 농촌의 형상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농업 개방과 농산물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전망하에서 농가부채 이자 탕감을 골자로 한 농가부채이자탕감법을 제정하여 농업인들이 농어촌 경제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일곱 번째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진정한 농협개혁 수립이다.

- 지난 3월 24일에 발족한 현 농협개혁위원회는 외형적으로는 농민단체, 조합장, 학계와 소비자단체 인사까지 다양한 인사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농협개혁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농협개혁 문제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할 농민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 이에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진정한 농협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농림부가 주관하는 “농협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중앙회 상임감사, 조합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기구화, ▲시도지역본부의 기능 개편, ▲조합원 및 대의원·임원의 최소 자격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 여덟 번째 정부 비료가격차손제도 부활이다.

- 비료차손제도 폐지 후(05. 7) 비료 가격은 최소 3~4배 폭등하여 농촌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비료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높아 현장 농가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 이에 정부가 비료가격상승 가격을 전액 보조하는 비료차손제도를 부활하여 농가들의 부담을 경감해 줘야 한다.

○ 아홉 번째 사료가격안정제도 도입이다.

- 배합 사료값이 50% 이상 폭등하면서 일부 축산 농가가 자살을 하는 등 사료 가격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제 곡물값 강세가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란 전망되면서 사료가격도 더욱 상승할 예정이고 이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붕괴로 이어 질 수 있다.
- 이에 정부, 농협, 업계, 농가가 부담하는 사료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열 번째 농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간 연장이다.

-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촌인력 부족의 보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적용시한이 2008년 말로 종료된다. 농축산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제도 폐지는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켜 축산업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적인 영세율 적용이 필요하다.
-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농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영구화하면 2~3년 주기로 되풀이 되는 감면시한 연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의 낭비를 해소 할 수 있다.

○ 열 한번째 농사용전기세를 병에서 갑으로 적용해야 한다.

-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전기를 사용하는 농기계 보급의 증가와 양곡생산위주에서 과채류, 축산, 화훼 등 특작생산위주로 농업이 변하고 있다. 수입농산물 급증, 한미FTA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저하로 축산시설 및 밭작물에 대한 농사용 전기세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 이에 축산시설 및 밭작물재배용 농사용전기세를 병에서 갑으로 적용해야 한다.

○ 열두번째 정예화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다.

- 현재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후에도 정예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추가지원제도가 구조적 결함(농신보, 부가세부담, 금리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호응하고 환영받는 것이 정책의 가장 큰 우선 조건임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자체에 농업인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이에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자금 용자금리 인하, ▲농신보 한도액 상향 조정, ▲농신보 부분보증제도 폐지 및 개선, ▲부과세 및 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증빙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